

외환거래기본약관

이 외환거래 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신청인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외환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한편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신청인은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다음 각호의 거래에 적용됩니다.

1. 외화송금
2. 외국통화 매입
3. 외화수표 등의 매입 및 추심
4.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거래

제2조(실명거래)

- ① 신청인은 실명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3조(외화송금)

- ① 은행은 신청인이 따로 요청하지 않는 한 환거래은행(지급은행, 추심은행 등 관련은행)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은행이 선정하기로 합니다.
- ② 은행은 환거래은행에 지급지시 등을 함에 있어서 통상어, 부호, 암호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신청인은 송금거래를 마친 때 지급지시서 사본 또는 송금수표 등으로 송금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④ 신청인의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은 송금수표의 원본을 반환받거나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송금취소 확인서를 받은 후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실제 반환 받은 금액에서 은행 및 환거래은행의 모든 비용을 뺀 외화금액 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전신환매입률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제4조(외국통화 매입)

- ① 은행이 외국통화를 매입한 후 위·변조통화임이 판명된 경우 신청인은 매입신청시 제출한 “외국환매입신청서”에 근거하여 외국통화금액과 매입당시의 외화여신연체이율로 매입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곧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관계기관 등에 의해 몰수되거나, 사고재발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위·변조통화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5조(외화수표 등의 매입 추심)

- ① 은행이 매입한 외화수표 등에 관하여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 통지를 접수하거나 은행의 관련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외화수표 등의 기재금액 : 해당외화금액 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한 원화금액
 2. 손해배상금 : 매입이자(매입한 외화수표의 추심에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자로 은행은 “환가료”라 합니다) 징수기간 (은행이 내부규정으로 정한 매입 외화수표의 예상추심기간) 최종일까지 입금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매입이자 징수기간 내에 지급거절 통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도처리일)부터 실제 상환한 날 전날까지 여신연체이율로 계산한 금액
 3. 기타 부대비용
- ② 은행이 추심대금을 지급한 후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추심대금의 반환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은행은 외화수표 등의 실물을 신청인에게 반환합니다. 그러나 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은행의 반환의무는 면제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매입신청시 제출한 외화수표등 또는 “외국환매입(추심)신청서”에 근거하여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지급하며 은행은 신청인이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지급할 때까지 외화수표 등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합니다.
- ⑤ 은행이 외화수표 등의 매입 또는 추심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6조(수수료, 비용 및 손해의 부담)

- ① 신청인은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제1조 각호의 거래에 따른 이자, 수수료, 지연배상금, 우편료, 전신료, 권리보전을 위한 법적절차 비용, 기타 모든 비용 및 손해를 부담하며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곧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인이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 ② 은행은 제1항의 이자, 수수료, 지연배상금, 우편료, 전신료 등 제반비용의 요율 및 계산방법을 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는 고시도록 합니다.
- ③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은행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조(준용규정)

신청인과 은행은 이 약관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는 한 국제상업회의소의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전자무역업무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8조(약관의 변경)

- ①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 내용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시행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합니다.
- ② 제1항의 변경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제1항 단서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시행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제1항 단서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이용자가 제3항 본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2016.9.2 개정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약관-582

